



특허제도

글·양순석 변리사 두레국제특허법률사무소

산업재산권제도 소개

- ① 특허제도 ... 양순석 변리사
- ② 상표제도 ... 한윤근 변리사
- ③ 의장제도 ... 한윤근 변리사

산업재산권 개요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인간의 두뇌 활동으로부터 일어지는 창작물을 보호함으로써 창작의욕을 북돋우어 사회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개념과 분류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지식재산권에는 대체로 著作權(Copyright), 產業財產權(Industrial Property) 및 신지식재산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보호하는 대상이 저작자의 “아이디어”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디어의 표현 방식이다. 저작권의 대상은 문학 작품, 미술 작품, 음악 작품 등 이른바 저작물들이며,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을 인정할

정도로 보호 기간이 길다. 신지식재산권에는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칩집적회로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대체로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여 주고 있고, 그 보호 기간도 짧다. 산업재산권으로는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商標權을 들 수 있다. 상표권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인 표장 또는 색채가 결합된 표장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다. 의장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외관상 장식적인 美感을 일으키는 의장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다.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일명 小發明이라고도 하는 고안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로서 특허권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특허 제도라고 하면 산업재산권제도 즉 예전에 공업소유권제도를 총칭하

는 의미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발명을 보호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를 말한다.

특허 제도

특허제도의 목적은 특허법 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한 사람에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 즉 특허권을 일정 기간동안 부여하여 투자 금액을 증액 회수하게 하고, 그 대신 그 발명 내용(기술)을 일반에게 공개하게 알게 함으로써, 새로운 발명을 유도하고 이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나가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특허권은 발명을 한 자에게 허여되는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데, 먼저 발명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발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에 배운 “발견은 이미 존재하던 것을 최초로 찾아내는 것이고, 발명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정의를 기억할 테지만, 특허법 제2조(정의)에서는 “發明이라 함은 自然法則을 利用한 技術的 思想의 創作으로서 高度의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과학에서 발견된 법칙들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어떤 법칙으로 정립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험상 일정한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된다고 할 때 그러한 경험법칙도 자연법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

석되고 있다.

발명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이 되지 못하고, 그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발명이 된다. 발명이란 전체적으로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반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실시의 반복은 발명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하여야만 한다.

기술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솜씨를 의미하고, 나아가서 객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술적 사상이란 어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나 공정들의 조합된 관념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 사상이 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제품생산 단계에까지 구체화 될 필요는 없으며, 즉 설계도가 작성되거나 회로의 요소의 정확한 수치까지 설계될 필요는 없다고 하여도, 여러 가지 수단이나 공정들이 구체적인 설계가 가능할 정도까지는 구체화되어 있는 관념 체계가 되어야 한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상상의 창작인데, 창작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만들어 진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발명이란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공지된 실현 가능한 수단 방법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조합함으로써 그 목표가 달성되어질 때, 그 수단 방법들을 조합하는 관념적인 체계이다. 기계, 기구, 또는 전자회로보드와 같은 물건 자체는 발명품이라고 하고, 발명은 그 물건이나 그 회로에 내재되어 있는 기술적인 관념(IDEA) 또는 개념

(CONCEPT)을 말한다.

어떤 학자는 발명의 정의를 “발명이란 기술적으로 표시된 인간의 정신적 창작으로 자연을 제어하고 자연력을 이용해서 일정한 효과를 놓는 것을 말한다”라고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발명이란 어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인과율을 이용하는 수단 방법들을 결합시킨 추상화된 관념 체계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또 발명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 또는 이들의 결합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 수단, 방법, 또는 이들의 결합이 유기적으로 동작되어서 소망하는 목적이 달성되어야 한다.

목적이 없는 발명이란 생각할 수가 없으며, 수단, 방법, 또는 이들의 결합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고, 그래서 유기적인 동작에 의하여 목적이 달성되어야 한다. 만약 목적 달성이 되지 아니하거나 필수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누락되면 발명으로서 성립이 되지 아니한다.

발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발명의 종류)

발명을 카테고리 상으로 구분하여 物의 발명과 方法의 발명으로 나눈다. 物의 발명이란 기술사상이 일정한 物, 즉 유체 물에 나타나 있는 것을 말하고, 방법의 발명이란 여러 가지 기술 수단의 단계, 배열, 순서 등에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방법에는 생산물이 직접 수반되는 제조 방법이 있고, 직

접 物의 생산이 수반되지 않는 분석 방법, 측정 방법, 사용 방법 등도 있다.

발명으로 인정되는 것 중에서도 현행법(제32조)에서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사회 공익이나 公序良俗의 보존을 위하여 特許 許與하지 아니한다.

컴퓨터가 관련된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컴퓨터가 관련된 발명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발명으로 인정되어 특허 보호 대상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가 결정된다. 만약 경제 법칙이나 논리 법칙, 철학, 또는 사회 법칙 등을 이용하는 것이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떠한 발명이 특허 받을 수 있는가?(특허요건)

발명을 한 자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하여야 하고, 이 출원된 발명은 출원에 대한 방식 요건을 만족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특허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특허가 許與된다.

특허 요건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공업은 물론이고 농업, 수산업, 임업 등 어떤

사업에서든지 이용되거나 생산되거나 하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 신규성 :

특허요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신규성이다. 발명에 신규성이 있어야 특허 받을 수가 있는데,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국내에 널리 알려진 발명(고안, 기술)과 동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국내 및 국외 간행물(특히 공보, 잡지, 신문 등)에 기재된 발명(기술)과 동일하지 아니하여야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참고]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특허하여 받기 위하여 특허청에 먼저 출원된 先出願과도 동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선 출원의 공개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발명 또는 고안)과도 동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규성 상실을 피하기 위하여 출원인은 자기의 발명을 일반에게 공개하기 이전에 출원부터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약간의 예외 규정(특허법 제 30 조 : 新規性擬制)이 있긴 하지만 우리 특허법은 先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먼저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 진보성 :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하고 新規하다고 하여도, 더 나아가 진보성까지 있어야 특허 허여 받을 수 있다.

진보성이란 발명의 창작의 정도가 얼마나 고

도 하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진보성 (Inventive Step) 또는 비자명성(Nonobviousness)이라고도 한다.

특허법에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서 특허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란 일반적인 지능 수준을 가진 자로서 당해 기술 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지식을 모두 알고 있는 자로 본다. 모든 지식을 실제적으로 모두 알고 있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공개된 문헌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가상적으로 모든 공개된 기술을 아는 자를 의미한다. 당업자라고도 한다.

선행 기술은 진보성의 판단 기준으로서 출원일 이전에 세상에 공개된 기술 모두를 의미한다. 공개된 것이란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당해 기술 분야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도 포함한다.

특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자에게 귀속된다. 이 권리자는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명자로부터 이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또는 법인)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만일 2인이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하였을 경우에는 이 권리자는 공동 발명자들이 공유하는 것이므로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지 못한다.

또한 회사에 고용되어서 연구 개발 의무를

부여받고 발명한 것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발명을 하였다고 해도 특허 받은 권리는 발명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 등은 종업원들이 이 한 발명을 인수하는 직무 발명 규정을 제정하여서 직무 발명들을 양도받아서 출원하고 있다. 이 때 종업원은 회사가 정한 금액을 자기 발명의 대가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허출원은 어떻게 하는가?

발명을 완성하였다고 해도 출원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발생되지 않는다. 특허출원은 출원서와 명세서 및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기 서류 이외에 양도증, 법인 증명서, 국적 증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할 때도 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 청구 범위가 기재되어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이 어떤 것인지 를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되는데, 즉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하여 기술 수단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작용되고, 그 결과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 청구 범위는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매우 신중히 고려하여 기재해야 한다. 청구 범위에는 독립항과 종속항을 필요한 수만큼 기재할 수 있으며, 독립항에는 기본적인 발명의 기술사상

을 정의하고, 종속항에는 그 기술사상을 구체화한 그래서 독립항을 한정하는 사항(실시예 등)을 기재한다.

심사는 어떻게 하는가?

출원된 발명이 특허요건에 충족되는지, 즉 거절 이유가 없는지를 조사 결정하는 것을 심사라고 한다. 이 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심사관은 각 기술 분야별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며, 심사관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심사 과정은 먼저 출원서 방식이 특허법에서 정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토하는 방식 심사가 있고, 발명의 내용을 실체적으로 심사하는 실체 심사가 있다. 실체 심사는 명세서를 읽고 발명을 파악하고 특허요건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명세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발명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실체 심사로의 진행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출원인은 특허청이 정한 바 방식에 맞게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출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원된 발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 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발명이 파악되어야만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불 특허 사유 등을 심사할 수 있고, 당해 기술 분야의 선행 기술을 조사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어 더 이상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출원은 特許査定 된다.

특허사정이 된 후 특허 등록료를 내면 등록이 되고, 특허권이 발생되며, 특허등록이 공고된다.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며 3인의 심사관 합의체가 다시 심사한다.

이의신청 이유가 타당한지를 심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허사정을 취소하는 取消決定을 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특허 維持決定을 한다. 유지결정이나 却下決定(증거 미제출의 경우)에는 불복하지 못한다.

특허등록을 공고하는 이유는 출원된 기술을 일반에게 널리 공개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심사관이 혹시 발견하지 못한 거절 이유를 일반인이 발견하여 공고된 특허가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異議申請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특허 받으면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특허권)

심사관으로부터 특허 사정서를 받은 출원인이 3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특허권이 발생되며, 이 특허권은 특허등록일로부터 존속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5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한 자, 즉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 발명에 있어서는 업으로서 그 물건을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업으로서 그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방법

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의 사용, 판매, 수입 또는 배포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즉 특허 받은 발명을 실시하고 그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그러나 이 권리는 그 발명을 業으로서 실시하는 권리이지, 業으로서가 아닌 개인적 및 가정적 사용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나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운수용 기계·기구 즉 여객기 선박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특허권은 특허 받은 그 나라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특허 받은 발명인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 제3자가 그 발명을 실시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 특허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특허된 물건이라 하여도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것은 특허권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지만,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미국에서 설정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선권 제도

어느 하나의 나라에서 특허나 실용으로 출원된 것은 파리 조약에 의하여 1년 이내에 제3국에 특허나 실용으로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최초에 출원한 날짜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단지 대만만

은 파리 조약 가맹국이 아니므로 우선권 주장 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만에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 출원 후 시급히 출원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우선권 제도를 이용하여 외국에 출원하는 길 과는 달리 외국에 출원하는 제도로서 국제 특 허 출원 제도(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가 있다.

PCT 출원 제도

PCT 제도는 수리관청에 출원을 하면서 PCT 가맹국을 지정국으로 정하면 각 지정국 에 특허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예로서 한국에서 출원한 출원을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특허청(수리관 청) 또는 조약가입국 수리관청에 출원하면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면 그 지정된 나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후속절차로는 우선 일자로부터 20개월 이내 에 그 지정된 나라에 국내 절차를 밟거나 우선 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각국의 국내 단계를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에 진행하여야 한다. 국제 조사 및 예비 심사 청구는 1999. 12. 1.부터 한국 특허청을 선정할 수가 있게 되어 한국어로 PCT 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PCT 출원이 되면 선행기술 조사 보고 서가 제공되고 예비심사를 청구하면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공된다.

국내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절차를 이행하 기 위하여 대부분 명세서의 번역문을 제출하 여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 절 차를 이행한 후에는 대부분 그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 통상의 절차가 진행이 된다.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권은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당연하 지만 無體財產에 대한 소유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에 비하여 권리 행사가 쉽지 아니하고, 따라서 권리를 향유하 기 위하여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侵害行爲禁止請求權),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損害賠償請求權) 또 특허권 을 침해한 자를 고소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有體物에 대한 소유권과는 달리 무형의 발명에 대한 소유권이므로, 이것 을 침해한 사실을 적발하기가 힘들고, 또 침해 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비전문가가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즉 어떤 물건이나 생산 방법이 특허권자의 발명과 같은지 또는 다른지 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특허권이 아무리 강력한 권리 라고 하더라도 침해자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

고자 할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전문가를 통하여 면밀히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침해가 성립된다고 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협상으로 해결토록 노력하고, 사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최후 수단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심판 제도

특허 심판은 특허 출원의 심사 결과 부당하게 거절사정된 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취소하고 특허등록사정을 구하거나,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 쟁송 절차로서 특허청내의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허 무효 심판

특허 무효 심판은 등록된 특허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심판으로서 특허로 등록될 수 없는 것이 심사의 잘못으로 등록된 것 이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 확인 심판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침해제품이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확인을 특허심판원에서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심판이다.

(3) 거절사정 불복심판

심사관의 부당한 심사 거절사정에 대하여 그 번복을 구하는 심판이다.

(4)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후출원된 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발명과 이용 저촉 관계에 있을 때 후출원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원 특허권자를 상대로 통상 실시권을 허여 할 것을 구하는 심판이다.

(5) 기타

위에서 열거한 심판 이외에도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보정각하에 대한 심판,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등이 있다.

(6) 심판 절차

심판이 제기되면 3인의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된다. 심판은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서면 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요즈음은 절차상 구두심리도 간혹 이용되고 있다.

[참고]

심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에서 심결 취소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허제도 활용

특허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특허 문헌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특허 출원된 기술은 특허 공개 공보 또는 특허 공고 공보에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공개된다. 특허 문헌은 이를 공보들을 주로 가르키는데, 특허 문헌에는 중요한 두 가지 정보가 있

다. 즉 기술 정보와 권리 정보가 그것이다. 기술 정보란 특히 문헌에서 설명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정보이고, 권리 정보란 특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권리들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특허권의 행사

개발된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권을 획득하면 자기의 발명품에 대한 시장을 독점하므로 기술개발에 투자된 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출원만 한 상태에서 발명을 실시하여 발명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제품을 보고 모방품을 생산 판매 할 수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특허권을 획득한 후에 제품을 출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허권을 획득하기 전에는 다른 모방자를 규제할 만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허권을 획득한 후에 제품을 출하한다고 하여도 새로운 발명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개량 발명을 유도해내기 때문에 신기술을 계속 독점하기 위해서는 이들 개량 발명들도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후속 출원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량 발명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여야만 계속 독점이 가능하다.

일단 특허 침해자가 나타나면 먼저 경고 서한을 보내어 자진하여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으나 대부분 포기하지 아니하므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나 권리침해자를 고소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권리침해 제품이 100% 완벽하게 모방한 것이라면 곧 바로 고소하는 것이 좋지만, 모방 제품이 어느 정도만 모방하고 다른 부분은 개악한 것이든지 아니면 개량한 것이라면,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고소하기보다는 특허청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모방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심결을 받은 다음 법원에 고소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고 특허권을 행사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기술 정보의 활용

특허 정보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꼭 찾아보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라 할 것이다.

특허 정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시중에 유사한 제품이 없다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을 때는 시중에 제품이 출하된 후에 권리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물론이고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제품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특허 정보를 조사하여 보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허 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특허청에 가서 직접 특허 문헌들을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이나 공중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특허 조사를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주는 특허 문헌 조사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조사된 특허 정보는 특허 맵(Patent Map 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분류되고 분석되어서 신제품 개발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다. 즉 기술

정보를 분석하면 지금까지의 기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명세서에 종래 기술과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기술 습득에도 중요하다.

권리 정보를 분석한 후 기존의 권리(타인의 권리)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개발하여야 하며, 기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제품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권리자와 협상하여 기술 도입 또는 특허 라이선스를 얻는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조품을 생산 판매한 후 도피하는 등의 방법(한탕주의)으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다.

특허를 조사할 때 그 특허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선행 기술이 발견되면 기존 특허를 무효시키면 된다.

기업 차원에서의 또 다른 특허제도 활용

독점권으로서의 특허권 활용은 위에서 설명 한 바 이외에도 기업에서는 특별히 특허제도의 직무 발명 제도를 활용하여 종업원의 사기 양양과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

특허법 제39조에서는 직무 발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 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직무 발명에 대하여는 사용자 등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직무발명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을 회사가 인수하여 특허출원하고, 종업원에게는 출원시 보상금과 등록되면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하여 받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되면 실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 직무 발명 제도에서 우수한 발명을 한 자에게는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인사 고과 시에 좋은 평가를 주게되고 따라서 승진의 기회를 주는 등 혜택이 베풀어 지기도 한다.

일단 발명을 하기 위하여는 선행 기술들을 조사하고 그 기술들을 이해하여야만 새롭게 개량할 수가 있으므로 연구직 종업원은 선행 기술 파악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연구원의 자질 향상과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도 직무발명제도가 효과를 나타내며 그 결과 직무발명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회사에서는 선행 기술에 정통한 지식을 가진 연구원들을 확보하게 되어 기술발전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원이 제출한 발명의 내용과 건수를 통계화하여 연구원 각자의 창의성 정도를 파악할 수도 있고, 연구 실적의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직무 발명 제도는 회사와 종업원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된다.